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법적 지위
– 장기 해당 여부, 수유장애, 노동력상실에 대하여 –

김 봉 겸*

Ⅰ. 서론
Ⅱ. 현행 법령의 내용과 문제의 소재
Ⅲ. 유방의 흉복부 장기 해당 여부
1. 법령 내용의 변천과 한일 비교
2. 법령상 관련 용어의 의미
3. 의학적 고찰
4. 결어
Ⅳ. 수유장애와 노동력상실
1. 수유장애
2. 노동력상실
Ⅴ. 결론

Ⅰ. 서론

유방에 대한 의학은, 육체(몸)적인 관점에서는 기능과 외모(형태)로 크게 나누어, 기능으로는 젖샘으로서 수유기동안 유아에게 모유를 제공하는 생리학이 있고, 외모로는 미시적 구조(structure)로서의 현미경적 조직학과 거시적 형태(form, shape)로서의 육안적 해부학이 있다.

정신(마음)적인 관점에서는, 특히 여성에게서는 여자다움(femininity)이라는 자아형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성적 매력(sexual attractiveness)을 갖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 논문접수: 2017. 6. 8. * 심사개시: 2017. 6. 8. * 게재확정: 2017. 6. 26.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성형외과(교원 정년퇴임, 전문의, 의학박사, kim123abcxyz@gmail.com)

최근 30~40여 년간 의학의 발달로 유방에 대한 '새로운 수술', 즉 확대술·축소술·재건술(혹 또는 암 제거후 유방 재건) 등이 급증하면서, 수술성과(成果, outcome)[1]가 기대 한만큼 만족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 일부에서는 원치 않은 수술 후 문제점, 즉 흉터·좌우비대칭·상처 치유 지연(괴사)·신경손상·젖꼭지문제(수유 문제) 등도 그림자처럼 따라 나타나게 되면서, 이것을 수유장애 및 노동력상실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신체장애 해당 여부를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유방 조직 상태를 장애로 판단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즉, ① 기능과 외모에서의 "정상과 비정상(과다 과소, 항진 저하)" 관점, ② 정신적인 "미추(美醜)"의 관점, ③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적(주관적, 전문적) 및 사회적(객관적, 일반적) 견해(입장)에 의해, 전적으로 달라진다. 특히 의학적 장애(WHO 정의 기준을 흔히 적용)와 법적 장애(의학적보다 장애가 매우 제한적)에서, 정신적인 관점이 인정되면서, 법적으로도 추형 장애가 노출된 신체(안면, 손 등) 이외인 '유방'으로도 확장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본 논제에서는,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수술성과 중에, 수유문제를 유발한 경우에서, 법령에서 규율한 노동력상실률과 관련된 '흉복부 장기 장해[2]'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만, 그 동안의 법령 변천, 한일 간 법령 비교, 법령 용어의 뜻풀이 그리고 의학적 고찰 등을 통해, 유방의 법적 지위(장기 해당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질병이나 사고를 주(主) '원인'으로 하여, 인간 생명이 위협받는 생사존망(生死存亡)에 돌입되었을 때, 의료가 관여하여(의료간섭), 그 진행 과정 방향을 우호적으로만 이끌고자 하지만, 결국은 "회복·호전·현상유지·심화·사망" 등 어느 한 곳에 귀착된다. 그런데 질병, 사고, 치료, 수술 등에서 연유된 "종합적인 결과"를 '의료결과' 또는 '의료결과=악결과'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주(主) 원인이 마치 의료에게만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었다. 이런 인과관계설정을 예방하고자, '의료결과'보다는 '의료성과'라는 용어로 순화시켜, 각각의 원인을 살펴보고 관여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인간 생명(육체적 관점)에 대한 치료보다는 외모(정신적 관점) 관련 치료인 미용성형외과수술에서도 같은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2) 장애와 장해에 대한 용어 사용은, 법령은 장해로 표현되어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그 이외의 곳에서는 모두 장애로 표기하였음.

II. 현행 법령의 내용과 문제의 소재

신체장애를 언급한 현행 법령[3]에서 유방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가배상법들의 시행령에 '흉복부장기' 용어가 등장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는 흉복부장기에 해당되는 '장기'들을 열거해 놓았는데,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6호],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 제1항 관련)』

등급	신체장해
제1급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8급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1급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6호],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개정 2010.11.15.』

등급	신체장해
제1급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8급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1급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2016. 12. 02. 검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 개정 2016.11.15.』

등급	신체장해	노동력 상실률(%)
제1급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100%
제3급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100%
제7급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0%
제8급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50%
제11급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개정 2016.03.28.』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격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나. 복부장기의 장해
    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
  바. 생식기장해

이처럼 법체계가 점차 하위 단계로 내려가면서, 법률 용어가 뜻하는 그 내용과 범위가, 입법-해석-판례를 거치면서, 점차 추상·일반적 표현에서 구체적으로 세분·명확하게 표현된다고 본다. 그런데 맨 마지막 단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유방을 흉부 장기에 열거·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의 위치가 흉부에 있기에 흉부장기에 포함된다 하여, 상위 법령인 시행령을 기준으로 흉부 장기의 장애로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4] 문제의 소재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III. 유방의 흉복부 장기 해당 여부

1. 법령 내용의 변천과 한일 비교

"신체장애등급"과 관련하여 60여 년 이상 동안의 법령 변화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이 1954년도에 제정되고 10급까지 등급 구분 시작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971년에 14급까지 확장되었고, 『국가배상법』에서 1980년에 노동력상실률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3-1>).

<표 3-1> 신체장애 등급의 변천 과정

시행령	제정, 등급	확장, 신설
근로기준법	1954-04-07, 10급까지	1975-04-28, 14급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4-06-09. 없음	1971-11-19, 14급까지, 신설
국가배상법	1967-04-13, 10급까지	1980-02-04, 14급까지, 노동력상실률 신설

"흉복부장기 기능 장애"라는 표현은, 구『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0호], 신체장해등급표, 제정 1954.04.07., 10등급』에서 제정 초기부터 언급된 것으로 보이며, 법안 제정에 참여 하였던 분들은 일제 강점기에 교육받은 분들로 추정되고 일본 법안을 기초[5)6)]로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1954년 제정 당시에는 한자어로 된 용어가 지배적이라 볼 수 있으며, 흉부는 몸통의 머리쪽(두측, 頭側)을, 복부는 몸통의 다리쪽(미측, 尾側)을 대략 지칭·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흉부에는 심장이나 폐장, 복부에는 위장·소장·대장·여성생식계 등이 있어, 즉 흉복부 '내장'인 '장기'로 통칭한 것으로 사료된다.

---

4) 법률신문,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2015. 10. 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6080, 2017. 5. 1. 검색.

5) 안태희, 장애관련 제기준의 비교분석, 조사연구 2001-1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경기: 창문인쇄공사, 2001, 8면.

6) 정한영, "제2장 장애와 손상의 개념(25~35면)",『대한의료감정학회, 의료감정학(장애평가와 의무기록감정)』초판, 서울: 중앙문화사, 2010, 34면.

그러나 제정 후 41년이 지난 시점인 1995년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전부 개정 1995.04.29.』에서, 흉부 장기에 대해,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격막 등으로 그 종류를 열거(列擧)·명시(明示)한 후, 2016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개정 2016.03.28.』까지 거의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정·확장·신설된 현재까지 60여 년 이상 동안, '흉복부 장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에 대해, 초기에는 혼란이 없었으나 후에 일부에서 혼란이 있어, 그로 인해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1995년도에 장기에 해당되는 것을 열거·명시하고, 그 이외의 것은 장애대상에서 제외 즉 '장애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흉복부'는 초기부터 '흉복강'을 뜻하였다고 보는 이유는, '흉복부 장기'는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격막 등"이라 명시함에 있다고 보인다. 1995년 전부 개정 당시 '흉복부'라는 용어를 '흉복강'으로 전부 고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장애 대상에 포함되는 '흉복부 장기'는 ('장기'라는 한자의 근본 뜻에 추가하여) 이러이러한 것이 장기라고 확실하게 열거하는 편이 후에 오해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 이후 큰 혼란이 없었다고 보인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신체장애 등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7] 사이에서는 한 군데만 서로 다르다 할 수 있다.

제1급부터 제10급까지는 같게 규정하였다가, 제11급에서, 일본은 《九 胸腹部臟器の機能に障害を残し労務の遂行に相当な程度の支障があるもの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이 있는 사람)》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11급을 제외시키고, 대신 일본의 제13급에 해당되

7) 일본 법령,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제2 신체장해등급표",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4&H_NAME=&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22F03601000023&H_RYAKU=1&H_CTG=44&H_YOMI_GUN=1&H_CTG_GUN=1 2017. 4. 26., 검색.

는 조항을 우리나라 제11급으로 삼았고, 제13급은 삭제한 것으로 느껴진다 (<표 3-2>).

<표 3-2> 대한민국과 일본 간 신체장애의 등급 비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일본, 厚生労働省
근로기준법_시행령 [별표 제6호] 신체장해의 등급 (제47조 제1항 관련)		労働基準法_施行規則 別表第二 (第四十条関係) 身体障害等級表
대통령령 제27619호, 시행 2016.11.29		最終改正 : 平成二八(2016)年三月三一日 厚生労働省令第五五号
등급	신체장해	身体障害
제1급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四 胸腹部臓器の機能に著しい障害を残し常に介護を要するもの
제2급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二の三 胸腹部臓器の機能に著しい障害を残し随時介護を要するもの
제3급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四 胸腹部臓器の機能に著しい障害を残し終身労務に服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
제4급		
제5급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一の三 胸腹部臓器の機能に著しい障害を残し特に軽易な労務の外服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
제6급		
제7급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五 胸腹部臓器の機能に障害を残し軽易な労務の外服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
제8급		
제9급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七の三 胸腹部臓器の機能に障害を残し服することができる労務が相当な程度に制限されるもの
제10급		
제11급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九 胸腹部臓器の機能に障害を残し労務の遂行に相当な程度の支障があるもの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이 있는 사람)
제12급		
제13급		三の三 胸腹部臓器の機能に障害を残すもの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		

유방암 등으로 유방실질조직들이 제거되었을 때 장애인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즉 유방을 장애 평가 대상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예(미국, 일본, 독일, 호주, 스웨덴, 프랑스, 대만)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제외되었다는 뜻으로 느껴진다(<표 3-3>).[8]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

<표 3-3> 장애범주의 국제비교 (2005)

국가	장애 종류	장애인 범주	장애인구 비율(연도)
한국	신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3.09% (2000)
	정신	정신지체, 정신, 발달	
	내부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미국	신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외형적 추형-신경계-근골격계-감각각관	20.6%
	정신	정신질환, 발달, 정서, 학습, 알코올 중독	
	내부	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혈액 및 내분비계, 암, AIDS	
일본	신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3.6% (1991)
	정신	정신지체, 정신	
	내부	심장, 호흡기, 신장, 방광 및 직장-소장 기능	
독일	신체	머리와 얼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추형	8.4% (1991)
	정신	신경계통과 정신	
	내부	호흡기, 심장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생식기, 신진대사, 혈관, 피부	
호주	신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안면기형	15.6% (1987)
	정신	정신지체, 정서,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내부	심장, 신장, 호흡기, 당뇨, 암, AIDS	
스웨덴	신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자료미상
	정신	정신지체, 학습, 정서,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내부	폐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당뇨	
	사회적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외국 이민자, 타인의존자, 노동력 감소자	

8) 이미진, 「우리나라 장애평가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의료법윤리학전공), 2006, 12면.

국가	장애 종류	장애인 범주	장애인구 비율(연도)
프랑스	신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기형, 추형	자료미상
	정신	정신지체, 정신질환, 정서장애	
	내부	심장, 신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내분비, 신진대사	
대만	신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음성	자료미상
	정신	지능, 자폐증, 노인치매	
	내부	중요기관 기능상실자, 식물인간, 노인치매 등	

출처 : 이미진, 우리나라 장애평가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표 7>).

정 2017. 5. 29.』의 『[별표 제1호]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개정 2014.6.30.』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법령상 관련 용어의 의미

"신체 명칭"에 관해서는,[9] 사람의 몸에서, 머리–팔다리를 제외한 부위를 "몸통"이라 하며, 어깨–가슴–복부–등–허리–옆구리로 나뉜다. 가슴은 <배와 목 사이의 앞부분>으로 풀이되며, 흉부(胸部)는 '가슴'으로 풀이되면서, 등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에서 가슴과 배의 반대쪽 부분>이라 하였다. 젖가슴은 <젖이 있는 가슴 부위>, 젖은 <유방>, 유방은 '포유동물의 가슴 또는 배의 좌우에 쌍을 이루고 있는 젖을 분비하기 위한 기관', 젖꼭지(유두, 乳頭)는 <젖의 한가운데 도드라져 내민 부분>, 젖꼭판(젖꽃판 ?, 유륜, 乳輪)은 <젖꼭지 둘레에 있는 거무스름하고 동그란 부분>, 젖무덤은 <젖꼭지를 중심으로 하여 젖꼭판(?) 언저리로 넓게 살이 불룩하게 두드러진 부분>, 젖퉁이는 <젖무덤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 하였다.

상기 기술한 법령들에 표기된 《흉복부, 장기, ~등》에 대한 '용어·낱말·단어'가 뜻하는 바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 각종 사전들의[10] 뜻풀이를 비교하

9) 장은하, 「현대 국어의 <신체> 명칭 분절구조에 대한 연구. <외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응용어문정보학과), 2004. 134~151면.

여 보고, 본 논제에서의 뜻풀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문 용어에서 일본의 영향으로 한자어가 주류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말 ‘가슴’이 제외되었음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뜻풀이에서 흉부보다는 ‘가슴’이 우위(優位)임을 주장한 사전을 인용하게 되어 그나마 위안을 삼고자 한다(<표 3-4>).

<표 3-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용어 뜻풀이

용어	뜻풀이
흉부(胸部)	「1」 ‘가슴’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2」 =호흡 기관.
가슴	「1」 배와 목 사이의 앞부분. 「2」『의학』=가슴안. [목과 가로막 사이의 부분. 심장, 허파 등이 있다. ≒가슴·흉강]. 「3」『의학』 등뼈, 갈비뼈, 가슴뼈와 가로막으로 이루어지는 원통 모양의 부분. 심장, 허파, 식도 따위를 보호하고 흉근으로 운동하여 호흡 운동을 돕는다. ≒흉곽. 「4」 마음이나 생각. 「5」 =옷가슴. 「6」 =젖가슴. [젖이 있는 가슴 부위. ≒가슴.『<젓가숨<역해><젖+가숨』] 「7」『동물』절지동물의 가슴 부분의 마디. ≒가슴마디·흉절(胸節).
복부(腹部)	■ 배의 부분. 갈비뼈의 가장자리와 볼기뼈 사이를 이른다.
배	「1」『의학』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2」『동물』 절족동물, 특히 곤충에서 머리와 가슴이 아닌 부분. 여러 마디로 되어 있으며 숨구멍, 항문 따위가 있다. 「3」 긴 물건 가운데의 볼록한 부분. 「4」『의학』 여성의 몸에서 아이가 드는 부분. 「5」『물리』 정상 진동이나 정상파에서 진폭이 가장 큰 부분. 「6」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알을 까는 횟수를 세는 단위.
장기(臟器)	■ 내장의 여러 기관.

10) 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017. 4. 24. 검색. ② 한컴 사전(한컴오피스 한글 2014), ③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 ④ 다음 어학사전(http://dic.daum.net/index.do), ⑤ iMac 사전(버전 2.2.1, 수정일 2016. 12. 24.).

용어	뜻풀이
내장(內臟)	■ 척추동물의 가슴 안이나 배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위, 창자, 간, 콩팥, 이자 따위가 있다. ≒장(臟). [=창자].
흉강(胸腔)	■ =가슴안. [목과 가로막 사이의 부분. 심장, 허파 등이 있다. ≒가슴·흉강].
복강(腹腔)	■ =배안. [척추동물 체강의 한 부분. 가로막을 사이로 위에는 가슴안이 있고, 아래는 골반강(骨盤腔)으로 통하며 그 안에 내장, 생식 기관 따위가 있다. ≒복강·복막강].
등(等)	「1」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2」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일상용어 표현인 오장육부(五臟六腑)에서, 오장은 '심장·폐장·간장·비장·신장(腎臟)'의 다섯 가지 내장을, 육부는 《위·소장·대장·담·방광·삼초(三焦)[11]》를 뜻한다 하였다.

가. 흉부(胸部, 가슴)에 대한 해석

법령에서의 '흉부'를 ① "배와 목 사이의 앞부분"이라 해석한다면, 유방은 당연히 흉부에 포함되는 것이고 오로지 유방만이 흉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개정 2016.03.28.』에서는 흉강에 있는 장기만을 열거·명시하였고, 흉부에 위치한 유방은 명시하지 않고 제외시켰다. 이렇게 되면 법령의 위상이 부적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흉부를 ② "호흡기관"이라 해석한다면, 논외로서 논란이 없게 된다.

흉부를 ③ "가슴안"이라 해석한다면, 이는 흉강을 뜻하므로, 역시 논외가 된다.

---

11) 삼초(三焦·三膲) 『명사』 [한의] [한의] 육부(六腑)의 하나로, 상초·중초·하초로 나뉨 《상초(上焦)는 가로막 위의 부위로 심(心)과 폐(肺)를 포함하고, 중초(中焦)는 가로막 아래로부터 배꼽 이상의 부위로 비(脾)와 위(胃)의 장부(臟腑, 오장육부 준말)를 포함하고, 하초(下焦)는 배꼽 아래의 부위로 콩팥, 방광, 대장, 소장 따위의 장기(臟器)를 포함한다[≒주포(走哺)].

흉부를 ④ “등뼈, 갈비뼈, 가슴뼈와 가로막으로 이루어지는 원통 모양의 부분”이라 해석한다면, 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흉부를 ⑤ “젖가슴”이라 해석한다면, 당연히 유방만 포함되고,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격막 등이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뜻풀이에 의거하여, ‘법령에서의 흉부’에, 유방을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장기(臟器)에 대한 해석

장기에 대한 해석은, 다음 “3. 의학적 고찰” 난에서 한다.

다. 등(等)에 대한 해석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전부 개정 1995.04.29.』《7. 흉복부장기등의 장해 / 가. 흉부장기의 장해 / (1) 영 별표 2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라 함은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격막 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에서, 장기를 열거·명시하면서, “~ 등”이라 한 이래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정해져 왔다.

여기서 “~등(等)”은, ㉠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을 뜻한다 한다.

㉠의 관점에서는 ‘그 밖에’ 더 열거할 장기로는 유방이 포함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유방은 장기가 아니다. ㉡의 관점에서는 현재 열거·명시한 장기 외에는 추가할 수 없다는 뜻이라 할 수 있으니, 장애등급 대상에 유방은 흉부장기로 인정되지 못함으로 해석될 것이다.

3. 의학적 고찰

가. 유방의 발생에 대하여

동물에서 유방 외모(형태)의 위치 및 개수를 보면, 영장류에서는 흉부 부위, 유제류에서는 사타구니 부위, 설치류나 돼지에서는 몸통 전체에 걸쳐 잔존한다.[12] 그리고 개·돼지에서는 아랫배 좌우 2줄로 여러 개의 젖이 달려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를 젖선(milk line)이라 부른다(<그림 3-1>).

<그림 3-1> 젖선(milk line) 분포도
(젖선을 따라 8쌍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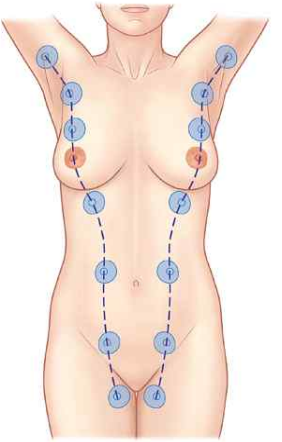

출처: Gray's anatomy(Fig. 54.24)[13]

인간의 유방은, 성차(性差)가 성숙되기 전, 임신 7~8주경의 태아 시기에 피부의 "표피(表皮)"가 두터워지면서 유두와 젖샘으로 발생하는데, 즉 위팔 겨드랑이 앞쪽, 겨드랑이 앞쪽, 가슴 겨드랑이 앞쪽, 가슴, 복부, 사타구니, 허벅지 사타구니 쪽에, 좌우 8쌍으로 발생·발육·성장·퇴화되면서, 출생 시에는 주로 '4번째 갈비뼈 사이'에 위치한 가슴 부위 1쌍만 남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다(<그림 3-1>). 그래서 남성에게서도 유두가 잔존하게 된다.

나. 유방은 정말 흉부에만 위치하고 있는가

엄밀한 의미에서, 질문에 답변이 궁색해진다.

'대부분은 그렇다'라는 답변이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다. 즉 항시 좌우 1쌍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항시 '흉부'에만 있는 것도 아니기

---

12) Robinson GW. Identification of signaling pathways in early mammary gland development by mouse genetics. Breast Cancer Res. 2004;6(3):105-108. p. 105.

13) Standring S, et al.. Chapter 54 Chest wall and breast (p. 915~938). In: Gray's anatomy. The anatomical basis of clinical practice. 40th ed. London:Churchill Livingstone; 2008.

때문이다.

즉 '부유방 및 유방암'의 발생 위치를 보면, 발생학과 관련된 흉부 이외의 곳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른 포유류처럼 '2쌍 이상'이 잔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를 부유방(副乳房)이라 칭하며, 발생률은 1/18 정도[15]되며, 주로 겨드랑이쪽(5%) 가슴 밑(90%)과 복부(5%)에 위치한다.[16] 또 젖가슴 이외의 곳에서 뜻하지 않게 유방암이 발생하기도 한다(<그림 3-2>).

<그림 3-2> '부(副)유방'의 발생 위치. 이곳에서 유방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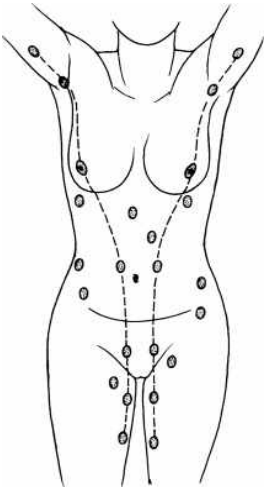

출처: Breastfeeding(Figure 2-6)[14]

다. 유방을 장기(臟器)라 칭할 수 있는가

유방은 발생학적으로 '표피에 의해 발생한 "젖샘"'이 주요소이기에 '피부부속기관'이라 부르게 되며, 그 외에 피부 및 '피하지방층'을 비롯한 서로 다른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방조직(breast tissue) 혹은 그냥 젖샘(mammary gland)이라 부른다.

장기라는 뜻은 내장의 하나로서, 흉강과 복강내의 기관이라 칭하고 있다. 이런 한자어의 근본 뜻과 법령 제정 혹은 1995년 전면 개정 당시에도 흉강내 장기를 뜻하는 바처럼, 유방은 내장 기관이 아니므로, 논란의 여지없이 장기로 포

14) Lawrence RA, Lawrence RM. Chapter 2 Anatomy of the breast (p. 34~55). In: Lawrence RA. Breastfeeding. A Guide for the Medical Profession. 8th ed. Elsevier. 2016.

15) Wikipedia. Supernumerary nipple. https://en.wikipedia.org/wiki/Supernumerary_nipple 2017. 5. 1. 검색.

16) Standring S, et al.. 주 13)의 글.

함되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그런데 한자어 사용치 않았던 한글 세대가 사회 활동 영역에서 중추가 되면서, 법학은 독일·일본(의료, 법학, 장해), 의학은 미국(의료, 신체장애, 노동력)을 기본으로 하였기에, 여러 나라의 제도·분류·용어 사용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흉복부 장기'에 대한 해석 차이가 다시 발생하고 논쟁에 접어들고 있다.

장기를 '뜻 글자'인 한자어로 표기하였으면, 제정 초기처럼 혼란이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소리 글자'인 한글로만 표기하면서 글자에 뜻이 사라지고 그 무엇인 장기만을 뜻하는 표현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의 장(臟)은 신체 내부 중에 두개강(頭蓋腔)이 아닌 흉복강을 근본적으로 뜻하는 것으로 본다(<표 3-5>).

<표 3-5> 장기(臟器)에서 '장'에 대한 낱말 해석

臟 – 오장(五臟) 장	
뜻	음(音)
月 – 육(肉)달 월	藏 – 감출 장
살, 몸	감추다, 숨다, 곳집, 광, 오장
사람 몸에 관계가 있는 일	물건을 넣어 두는 곳집, 물건이 속에 넣어져 있는 일

출처: (hanja.naver.com)

인간 신체에 대해, 서양의학은 cell(세포)–tissue(조직, 組織)–organ(기관, 器官)–system(계, 系)의 순서로 형태와 기능을 체계화하고 질병과 신체장애 평가에 기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organ에 대비(對比)한 용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한의학(韓醫學)에서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용어였던 장기(臟器)를 기관과 동일한 뜻으로 선택·혼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서양의학에서는 'organ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유방은 organ이 아니라는 주장과 유방과 피부가 organ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organ을 필요에 따라 장기로 번역한 우리에게도 유방과 피부가 장기에 해

당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장기는 신체 내부인 흉복강에 위치하고 독립적으로 생긴 것을 오장육부라는 용어로, 어느 신체 부위가 이에 해당되는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지칭·확정하고 사용되어 온 상태이다.

이처럼 organ과 장기의 고유한 의미에는 동서양의 의학과 사상 체계가 다름으로 인해 역시 미묘한 차이가 있어, 서양의학에서의 organ을 무조건 장기로 번역하는 것은 흉복강에서는 일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본 논제와 같이 흉복강 이외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식분야에서 심장·신장(콩팥)·간장 등의 이식은 "장기 이식(organ transplant or transplantation)"으로, 피부 이식은 그대로 "피부이식(피부이식편(skin graft), 피부판(피판, skin flap)"으로, 팔뚝 부위에서의 이식은 "복합조직 동종이식(composite tissue allograft or transplantation)"이라 명명하고 있다. organ이라는 용어 혹은 정의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듯싶은 것이라고 본다.

팔뚝은 피부, 피하지방층, 근육, 힘줄, 뼈(골수 포함), 신경, 혈관, 림프관 및 림프절 등처럼 다양한 면역원을 포함한 여러 조직 구성체로 이루어져 있다. 유방도 피부(젖꼭지, 젖꽃판), 피하지방층, 젖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복합조직체일 뿐이다. organ이라고 구태여 강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organ을 장기로 번역한 후, 유방을 장기로 지칭함에는 무리라고 본다.[17]

그러나 유방을 organ이라 주장할 경우,[18] 땀샘·기름기샘·모낭·털 등도

---

17) Ackerman AB, Kessler G, Gyorfi T, et al. Contrary view: the breast is not an organ per se, but a distinctive region of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Am J Dermatopathol. 2007;29:211-218. [본 논문은, 유방의 "발생학-조직학-해부학-병리학" 관점에서 세포-조직에 대해 현미경적 육안적 소견을 기술하면서, 유방은 피부와 피하지방으로 구성된 독특한 구역이라고 하였다. 또한 "organ"에 대해, 의학적-비의학적 사전적 정의를 비교하면서, ① 형태 ② 고유 단독 기능(specific or specialized function,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고, 다른 조직에서 고유하게 주 기능으로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갖추어야 organ이 된다고 하였다. 유방이 organ이라고 한다면, 같은 apocrine gland를 갖고 있는 액와(axilla)와 외이도(auditroy canal)도 organ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유방을 organ으로서 인정함을 배척하였다.].

18) Cassarino DS. The breast is a distinct organ. Am J Dermatopathol. 2008;30:204. [주 17) Ackerman 논문에 대한 "Letter"로서, Ackerman이 주장한 'organ 정의(定義, definition)'를

organ이라 해야 한다. 이 모두가 피부부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더 상위(上位) 조직인 피부는 당연히 organ이라 해야 한다.[19] 이럴 경우, organ 내부에 organ이 있는 격이 되고, 가슴 부위 피부에 생긴 외상 및 수술절개반흔 모두가 흉복부 장기 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부위 피부는 장애에 해당되지 않은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4. 결어

이상과 같이, 유방은 흉부 장기인가에 대해 여러 관점을 종합하면, 흉부 장기로 지정하기에는 현재까지 적합지 않다고 사료된다(<표 3-6>).

<표 3-6> 유방이 흉부 장기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견해

	흉부		흉강	장기	
법령	가슴, 흉강 포함할 때	○,△	×	×	장기 포함 여부에 관한 혼란 방지 목적으로, 시행규칙에 이에 해당되는 장기를 열거함.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장애장기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
	흉강의 의미일 때	×			
사전	가슴을 뜻할 때	○,△	×	×	내장 기관인 장기가 아니다
	흉강을 뜻할 때	×			
의학	대부분 가슴에 분포	○,△	×	△	장기=기관(조직)이라 주장할 때
	팔 복부 다리에도 분포	×		×	내장 기관인 장기가 아니다
비고: ○ : 긍정 / △ : 중립 / × : 부정					

근거로 내세우면서, 유방을 organ이라고 하였다.] [Cassarino 주장대로 한다면, 팔 다리 각 부위들을 각각 organ이라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며, 신체 각 부위가 전부 organ이 된다고 봐야 한다. 즉 형태가 독특하게 독립적이고 기능에서는 다른 기관이 이를 흉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Proksch E, Jensen JM, Chapter 47 Skin as an organ of protection. In: Goldsmith LA, Katz SI, Gilchrest BA, Paller AS, Leffell DJ, Klaus Wolff K. Fitzpatrick's Dermatology in general medicine, 8th ed., McGraw-Hill Companies, Inc. 2012. http://accessmedicine.mhmedical.com/content.aspx?bookid=392&sectionid=41138745 2017. 06. 20. 검색. [피부과 영역에서는 피부를 organ으로 주장하고 있다.].

IV. 수유장애와 노동력상실

1. 수유장애

유방의 기본 기능은 모유의 생산·저장·분비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지장이 있으면, 즉 모유 생산 분비가 적거나 많으면 신체장애율 계산에 산입되는 형국이다.[20]

유방에 대한 수술은, 큰 분류에서, "확대술·축소술·재건술(혹, 암제거)"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유방의 정상과 비정상은 논외로 하고 단순한 논리로, ① 수술받는 여성들의 유방이 작으면, 유방조직(젖샘·젖꼭지 및 피하지방)이 덜 발달되었을 것이고, ② 크다면, 피하지방량이 많아 젖샘의 분포가 옅게 되고 젖꼭지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③ 혹이나 암이 있다면, 대체로 젖샘에서 발생한 것이라 젖샘 기능이 떨어져 있게 되고, 진단 후부터는 모유수유는 거부하게 된다. 그 어느 경우라도 모유의 생산·저장·분비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더군다나 식이요법으로 인한 절식 소식으로 인해 가임기(15~49세) 여성 중 특히 젊은 여성들의 유방 건강이 약화된 상태이다. 이처럼 현대 여성에서, 유방의 성장 발육이 미흡하게 된 상황에서, 여성의 5~10%는 불임이기에,[21] 결국은 임신 출산 후에 모유 수유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즉 정상 출산 후에도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가임기 여성이라 하여 단순한 유방만의 문제를 원인으로 수유장애 배보상을 논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애후 노동능력평가 시, 엄지 혹은 검지손가락이 장애인 경우, 피아노 연주자에게는 치명적이지만, 가수에게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

20) Rondinelli RD. 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6th ed. (634pages, 4th printing, Oct. 2014). 2007. p. 239.

21) Hall JE. Chapter 82, Female Physiology Before Pregnancy and Female Hormone (p. 1037~1054). In Hall JE. Guyton and Hall Textbook of Medical Physiology (13th ed.). Elsevier, Inc. 2016.

데 피해자는 피아노 연주자를 가정하여 평가받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동일한 손가락의 장애에서, 상이(相異)한 노동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는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어, 여러 분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22]

그래서 본 논제에서도 수유장애 평가함에 있어, 유방 그 자체의 문제만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결혼–임신(불임)–출산(産母)–모유수유(乳兒)의 지속적으로 이어진 연결고리를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포함시켜 보고자 하였으며, 옛날 사고방식 혹은 상식 차원의 지식보다는 근거 위주를 강조하고자 2016년도에 발표된 통계청 평가 자료들을 살펴보고 인용하였다.[23] [24]

가. 결혼(초혼) 연령

2015년도 초혼 연령은 30세로서 만혼으로 향하고 있으며, 혼인건수는 30.3만에서 이혼건수는 10.9만이다. 2016년, 가임기(15~49세) 여성(인구의 49.9%)의 인구는 1265만 명(여자 인구의 49.5%) 정도이다(<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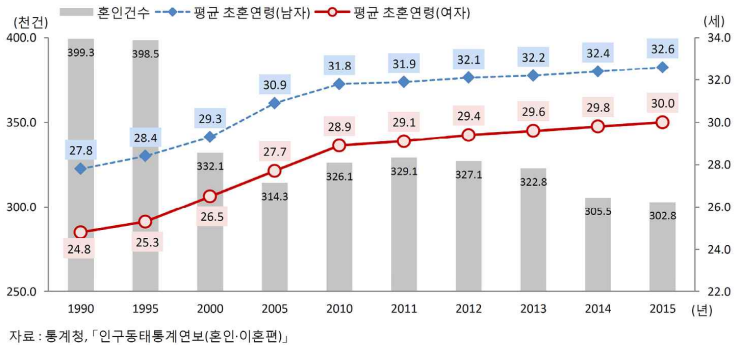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6 일·가정양립 지표", 4면.

<그림 4–1> 혼인건수 및 성별 초혼연령

22) 이경석 외, "제7장 장애정도의 판단(3. 신체장애와 직업, 170~174면)",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신경계 장애 중심』 5판, 서울: ㈜엠엘커뮤니케이션, 2014, 171면.
23) 통계청, "2015년 출생 통계(확정)",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2016. 8. 24.
24) 통계청, "2016 일·가정양립 지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2016. 12. 13., 3, 4면.

나. 출산 연령 및 출산율

2015년도, 20~24세 출산율이 제일 낮고, 25~29세 출산율은 35~39세 출산율보다 약간 높은 상태로, 궁극적으로는 30세 이상의 출산율이 반을 넘어서고 있다(<그림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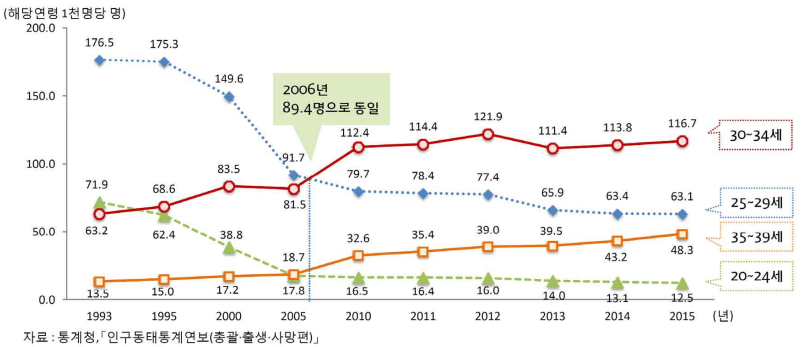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16 일·가정양립 지표", 6면.

<그림 4-2> 연령별 출산율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이 2005년 이후부터는, 30세 이상이 50%를 넘어 고정된 듯싶다가(<그림 4-3>), 2015년에는 고령산모(35세 이상)가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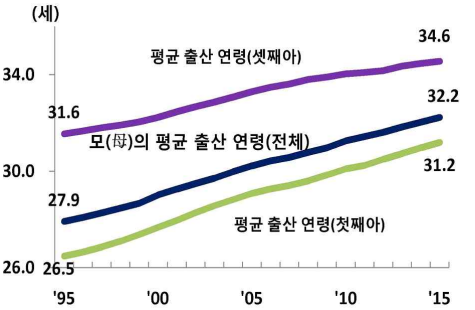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5년 출생 통계(확정)", 7면.

<그림 4-3>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 199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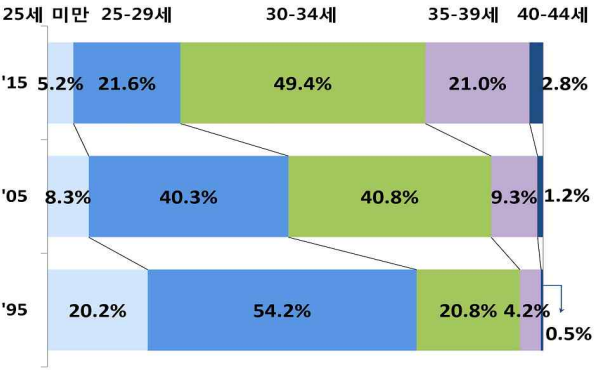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5년 출생 통계(확정)", 7면.

<그림 4-4>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구성비 추이, 1995, 2005, 2015

까지 차지하고 있다(<그림 4-4>). 이는 과거와 달리 결혼 연령이 점차 조혼에서 만혼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첫아이 출산 연령도 늦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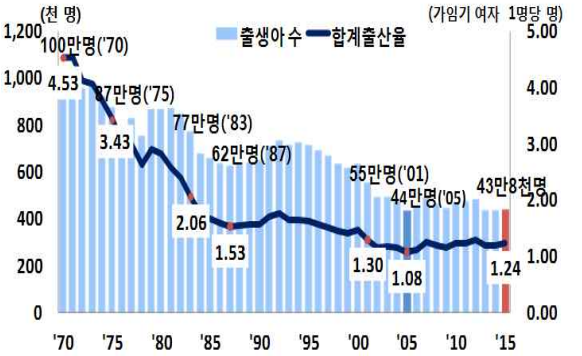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5년 출생 통계(확정)", 4면.

<그림 4-5>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5] 추이, 1970~2015

25) 한 여자가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 합계출산율(TFR) $= \sum_{i=15}^{49} (\text{ASFR})i \div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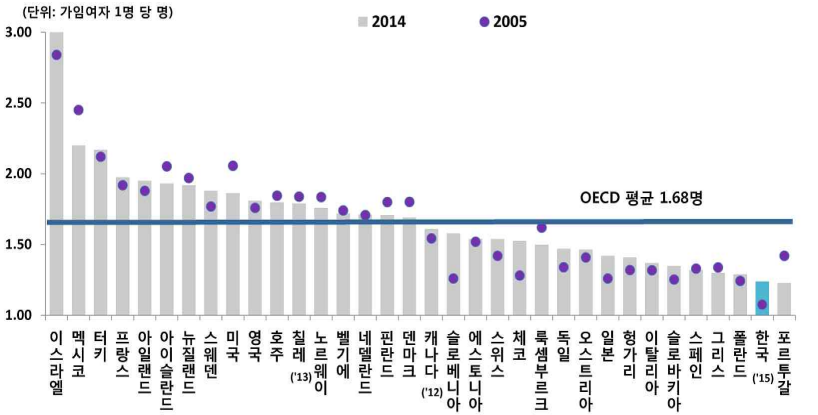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5년 출생 통계(확정)", 16면.

<그림 4-6> 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비교, 2005, 2014

출산율은 점차 하강하다가 10여 년 전부터는 소강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OECD 34개 회원국과 비교에서도 거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4-5>, <그림 4-6>).

다. 모유수유율

모유수유(授乳, 산모 및 모유은행)를 위해서는,[26][27]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유방조직이 모유를 생산·저장·분비해야 한다: 유방조직의 손상, 가임부 여성이 임신을 원치 않는다, 산모가 질환 및 다른 여건 등으로 인해, 생산·저장·분비가 어렵다.

② 산모가 신생아에게 수유할 환경에 있어야 한다: 출산 후 산모가 출산 후 후유증 등으로 수유 자체를 거부한다, 산모의 건강 이상, 직장 출근으로

---

26) 대한_모유수유_의사회, 신생아 모유수유에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야할 16가지, http://www.bfmed.co.kr/subView.html?cate=1&idx=749, 2017. 05. 22. 검색.

27) 송강훈 외, 전국규모 모유은행 운영보고,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Vol. 53, No. 4, 2010.

인하여 수유 환경이 부적합하다.

③ 신생아가 산모로부터, 젖을 빨아 먹고 소화시키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신생아가 젖을 빨아 먹지 못하거나 뱉는다, 신생가가 모유에 대해 거부 면역반응을 보인다. 설사를 한다, 신생가가 모유 소화 능력 감퇴가 있다, 선천성 심장병 등을 갖고 있다.

이 중 어느 단계에서라도 이상이 생기면 수유장애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일단 출생 후 6개월간 모유로만 수유한 비율은 약 34% 정도로 다음과 같다(<표 4-1>).

<표 4-1> 모유 및 분유 연도별 사용빈도 비교(1996, 2011, 2016년도)

년도	연구 대상: 장소, 산모	완전모유수유실천 6개월	모유 + 분유	분유
1996①	원주, 322명 어머니, 530명 자녀	23.2%	31.7%	45.1% (우유)
2011②	서울 경기, 300명	34%, 병원 입원 중 39%, 산후조리원 입원 중 56%	27%	39%
2016③	680명	34.9% (정부 요구: 66.8%)		

출처: ①최상순[28], ②유니세프 한국위원회[29], ③곽명순[30] 논문집.

완전모유수유를 못하고, 분유를 먹이거나 혼합수유(모유 + 분유)를 한 주요 이유는, 모유 생산(75%)에 문제가 제일 많으며(<표 4-2>), 모유저해 및 중단 원인은 직장·직업과 모유량 부족이 대부분이다(<표 4-3>).

---

28) 최상순 외, "모유수유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제2권 제2호), 1996, 222~234면.

29)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1년 임산부의 날을 맞아 산모 대상 모유수유실태 조사. 2011. 10. 19.", http://www.unicef.or.kr/news/notice_view.asp?idx=21892, 2017. 4. 25. 검색.

30) 곽명순, 「완전모유수유 6개월 실천 관련요인」,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관리학과), 2016.

<표 4-2> 분유를 먹이거나 혼합수유(모유 + 분유)를 한 주요 이유(2011년)

1	젖이 잘 나오지 않아서	75%
2	직장에 나가야 해서	7%
3	분유가 좋아서	1%
4	아기나 산모가 아파서 등 기타 이유	16%

출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31]

<표 4-3> 모유 저해 요인 및 중단 원인 (1996)

모유 저해 요인		모유 중단 원인	
직업	26.1%	모유량 부족	34.5%
산모 및 아기의 질병	16.1%	직장	19.6%
유방의 비정상	12.7%	아기의 설사	9.9%

출처: 최상순 외5인, "모유수유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32]

2. 노동력상실

장애평가 대상자 분류[33]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고 있다. ① 어떠한 특정 상황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법률, ② 특정 직업에 대한, 보험적 특징이 있는 법률, ③ 사회보장적 성격이 존재하는 법률.

또한 신체장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능력이 감퇴되는 것은 아니다. ① 따라서 신체장애율의 경우에는 의사가 의학적인 지식만으로 장애를 판단할 수 있으나, ② 노동력상실률과 같은 능력상실률을 판단하려면 의학적 지식 이외에 보험이나 법적·사회적 사실들을 고려해야만 한다.[34]

모유수유를 노동으로 볼 경우, ≪통계청 표준직업분류,[35] 9. 단순노무종사

3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주 29)의 글.
32) 최상순 외, 주 28)의 글, 222~234면.
33) 이미진, 주 8)의 글, 21면.
34) 이철, 「우리나라 신체장애 평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의학과 법의학 전공), 2006, 17면.
35)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판 2007. 10. 1. (통계청 고시 제2007-3호) (7차, 2017-하반기 예정).

자, 95120. 육아도우미≫에서는, “고용주의 아이를 돌보는 자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의 피복을 수선, 세척, 다림질하기도 하며 아이 양육에 관계되지 않은 가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주요업무>로는, 아이의 우유나 간식을 먹인다, 놀이기구로 유희를 하며 놀아 준다, 육아의 의복세척 및 침구손질을 하기도 한다. <직업예시>로는, 가정보육사·보모·유모(乳母)[36]·시설보조 보육교사”라 되어 있다.

따라서 수유를 노동으로 보는 직업은 유모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보는데, 현재 이런 직업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37]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수유장애와 노동력상실률과의 관계를 구성하여 보면, 수유(授乳)란, 授(줄 수)와 乳(젖 유)로서, ‘젖먹이에게 젖을 먹임’이라는 사전적 뜻풀이를 볼 때, 모유수유장애란 유아에게 모유를 줄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느껴지며, 이때의 수유 기간을 노동기간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 산모와 유아 관계에서, 완전모유수유 실천 기간을 6개월로 잡아도, 최대 34.9% 밖에 실행치 못하기에, 유방의 모유수유를 함에 있어서의 신생아 출생당 노동기간은 보통 6개월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2년(자연적인 모유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비정상 상태의 관계에서는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

V. 결론

유방(乳房)조직은 피부·유선(젖샘, 유선관)·젖꼭지·피하지방층·피부부속기관 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① 해부학적 위치는, 대부분 흉부에 있지만, 흉부(흉곽) 내부(內部) 흉강(胸腔)이 아닌 외부(外部) 전면(前面)에 있으며 (일

36) 남의 아이에게 그 어머니 대신 젖을 먹여 주는 여자. ≒유온(乳媼)·젖어머니.
37) 이경석 외, “제1장 의료와 배상(4. 신체장애와 능력상실, 29~38면)”,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신경계 장애 중심』 5판, 서울: ㈜엠엘커뮤니케이션, 2014, 31면.

부에서는 팔죽지, 흉부, 복부, 허벅지 등에서도 나타난다), ② 사전적 글말[文語]인 장기(臟器)를 뜻하는 오장육부(五臟六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흉부 내부 흉강내에 있는 내장'을 장기라 정의·표현하고, 각각의 어떤 내장이 장기인지를 오랜 시간동안 지목하고 사용해 온 시점에서, 흉부(흉곽) 외부에 위치한 유방조직을 장기라 정의하고 인지함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수유장애는 낮은 출산율과 실제로 모유수유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 강조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유모로서의 직업도 현재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유방을 흉복부 장기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포함시키려면, ① 법령집의 용어를 교체하거나(흉복부 장기에서 ㉠ 흉복부를 '흉복부 및 흉복강'으로 그리고 ㉡ 장기를 '장기 및 기관'으로), ② 여러 법령에서 용어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에 유방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피부부속기관인 유방을 흉복부 기관 혹은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당연히 다른 피부부속기관도 포함시켜야 하는 모순관계가 도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 완전히 배제시키려면, ① '흉복부'를 '흉복강'으로 하거나, ② "유방은 제외된다"라는 단서 조항만 삽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하지만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즉 새로운 해석과 판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안태희, 『장애관련 제기준의 비교분석, 조사연구 2001-1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경기: 창문인쇄공사, 2001.

정한영, "제2장 장애와 손상의 개념 (25~35면)", 『대한의료감정학회, 의료감정학(장애평가와 의무기록감정)』 초판, 서울: 중앙문화사, 2010.

이경석 외,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신경계 장애 중심』 5판, 서울: ㈜엠엘커뮤니케이션, 2014.

<학위 논문>

곽명순, 「완전모유수유 6개월 실천 관련요인」,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관리학과), 2016.

이미진, 「우리나라 장애평가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의료법윤리학전공), 2006.

이 철, 「우리나라 신체장애 평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의학과 법의학 전공), 2006.

장은하, 「현대 국어의 <신체> 명칭 분절구조에 대한 연구. <외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응용어문정보학과). 2004.

<기타 자료>

김승권 외,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송강훈 외, 전국규모 모유은행 운영보고,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Vol. 53, No. 4, 2010.

최상순 외, "모유수유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2권 제2호, 1996.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판 2007. 10. 1. (통계청 고시 제2007-3호) (7차, 2017-하반기 예정).

_____, "2015년 출생 통계(확정)",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2016. 8.

24.
_____, “2016 일·가정양립 지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2016. 12. 13.

<인터넷 자료>
대한_모유수유_의사회, 신생아 모유수유에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야할 16가지, http://www.bfmed.co.kr/subView.html?cate=1&idx=749, 2017. 05. 22. 검색.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2016. 12. 02. 검색.
법률신문,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2015. 10. 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6080, 2017. 5. 1. 검색.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1년 임산부의 날을 맞아 산모 대상 모유수유실태 조사. 2011. 10. 19.”, http://www.unicef.or.kr/news/notice_view.asp?idx=21892, 2017. 4. 25. 검색.
일본 법령,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제2 신체장해등급표”,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4&H_NAME=&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22F03601000023&H_RYAKU=1&H_CTG=44&H_YOMI_GUN=1&H_CTG_GUN=1 2017. 4. 26., 검색.
Wikipedia. Supernumerary nipple. https://en.wikipedia.org/wiki/Supernumerary_nipple 2017. 5. 1. 검색.

<외국 자료>
Ackerman AB, Kessler G, Gyorfi T, et al. Contrary view: the breast is not an organ per se, but a distinctive region of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Am J Dermatopathol. 2007; 29: 211-218.
Cassarino DS. The breast is a distinct organ. Am J Dermatopathol. 2008; 30: 204.
Hall JE. Chapter 82, Female Physiology Before Pregnancy and Female Hormone (p. 1037~1054). In Hall JE. Guyton and Hall Textbook of Medical Physiology

(13th ed.). Elsevier, Inc. 2016.

Lawrence RA, Lawrence RM. Chapter 2 Anatomy of the breast (p. 34~55). In: Lawrence RA. Breastfeeding. A Guide for the Medical Profession. 8th ed. Elsevier. 2016.

Robinson GW. Identification of signaling pathways in early mammary gland development by mouse genetics. Breast Cancer Res. 2004;6(3):105-108. p. 105.

Rondinelli RD. 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6th ed. (634pages, 4th printing, Oct. 2014). 2007. p. 239.

Standring S, et al.. Chapter 54 Chest wall and breast (p. 915~938). In: Gray's anatomy. The anatomical basis of clinical practice. 40th ed. London:Churchill Livingstone; 2008.

Proksch E, Jensen JM, Chapter 47 Skin as an organ of protection. In: Goldsmith LA, Katz SI, Gilchrest BA, Paller AS, Leffell DJ, Klaus Wolff K. Fitzpatrick's Dermatology in general medicine, 8th ed., McGraw-Hill Companies, Inc. 2012. http://accessmedicine.mhmedical.com/content.aspx?bookid=392&sectionid=41138745 2017. 06. 20. 검색.

[국문초록]

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법적 지위
- 장기 해당 여부, 수유장애, 노동력상실에 대하여 -

김봉겸(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성형외과)

최근 들어서면서 유방에 대한 수술이 종류가 확대술·축소술·재건술로 대별되고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원치 않은 수술성과에 대한 분쟁이 증가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배보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대두되면서, '원치 않은 수술성과'를 '수술 후의 문제점' 보다는 "장애'로 보는 관점이 증가되면서, 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흉부 장기 해당 여부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에 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나오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 및 의학적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다.

흉부 장기에 유방 포함 여부의 혼란은 용어 선정 후 그 해석이 시대 변화와 맞물려 유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에서의 자구 해석을 살펴보면, 유방은 흉부 장기에 해당되지 못함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수유장애는 낮은 출산율과 실제로 모유수유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강조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유모로서의 직업도 현재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유방을 흉복부 장기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포함시키려면, ① 법령집의 용어를 교체하거나(흉복부 장기에서 ㉠ 흉복부를 '흉복부 및 흉복강'으로 그리고 ㉡ 장기를 '장기 및 기관'으로), ② 여러 법령에서 용어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에 유방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피부부속기관인 유방을 흉복부 기관 혹은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당연히 다른 피부부속기관도 포함시켜야 하는 모순관계가 도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 완전히 배제시키려면, ① '흉복부'를 '흉복강'으로 하거나, ② "유방은 제외된다"라는 단서 조항만 삽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하지만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즉 새로운 해석과 판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유방, 젖샘, 흉복부, 흉부, 장기, 기관, 신체장해, 신체장애

The legal status of the breast in assessing physical disability

Bong Kyum Kim

M.D., Ph.D. 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Inch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Breast tissue is composed of skin, mammary gland(including lactiferous duct), subcutaneous fat layer. The anatomical position is on the anterior chest wall(the outside of the chest cavity) but not on the inside of the thorax.

Therefore, when the internal organs in the thoracic cavity are defined and expressed as 'organs' and the internal organs of each are labeled for a long time, for the breast located outside the thoracic cavity, it is thought that there is considerable difficulty in defining and recognizing the breast tissue as organ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discourage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or not the breast is contained in the chest(or intra-thoracic cavity).

In order to completely exclude it, it is assumed that the "chest-abdomen" can be called the "intra-thoraxic or intra-abdominal." But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terms in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I think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insert only the clue clause "Breasts are excluded" in the detailed criteria for grading.

In order to include i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erms of the ordinance or to say that the breast is exceptionally included.

Keyword: Breast, Mammary gland, Organ, Chest, Abdomen, Intra-thoracic, Intra-abdominal, Impairment, Disability